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9,791,782	12,893,753
일반회계	311,441,974	9,343,259
특별회계	118,349,808	3,550,494
공기업특별회계	4,454,129	133,624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4,454,129	133,624
기타특별회계	113,895,679	3,416,8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364,535	400,936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739,885	292,197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300	8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2,508	22,275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1,816,745	1,254,50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322,608	219,67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393,000	791,790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572,090	47,16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008,085	360,243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07,923	27,2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80,89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